

## ■ 영국 - 정보 커미셔너(Information Commissioner)

바로가기 ⇒ <http://www.dataprotection.gov.uk>

메일보내기 ⇒ [data@dataprotection.gov.uk](mailto:data@dataprotection.gov.uk)



유럽의 인구 약 5977만명의 섬나라인 영국(UK)은 1984년부터 정보보호등록관을 설치하여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사전 등록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왔다. 이러한 정보보호등록관은 그 역할과 위상이 점차 증대하여, 1998년에는 전면 수정된 정보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1998)에 따라 정보보호커미셔너(Data Protection Commissioner)로 개칭되고, 2000년에는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에 따라 정보커미셔너로 변천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 1. 커미셔너의 지위

영국의 정보 커미셔너는 1998년 정보보호법 및 2000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독립 감독기구로서, 커미셔너는 여왕의 특허장에 의해 임명되며 5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두 차례에 걸쳐 재임이 가능하다. 단, 커미셔너는 65세 미만의 자이어야 한다. 영국의 정보 커미셔너는 독립기구인 만큼 커미셔너의 임금 및 연금은 하원의 결의를 통해 결정되고 조성된 통합기금에서 지급된다. 또한 활동을 위한 예산은 의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내무부가 지원하며, 정보커미셔너는 각종 활동에 대해 의회에 직접 보고한다. 현재 영국의 정보커미셔너는 Richard Thomas로 2002. 12. 02일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 2. 관장법률

정보커미셔너는 처음 설립된 1984년 당시에는 정보처리에 대한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었으나, 1998년 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에는 정보공개법도 함께 관장하게 됨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1998년 정보보호법은 EU의 정보보호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법률로,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래 동법은 주로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특정한 수기 파일링시스템에도 확대적용되고 있으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모두 적용된다. 또한 동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를 규율하기 위한 정보보호 8원칙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0년 정보공개법은 정부와 기타 공공기관이 기관의 업무범위 내에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1998 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일부 수정하고 있는 한편, 개인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열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보커미셔너는 전자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1999년 전자통신(정보보호및프라이버시)규칙(The Telecommunications(Data Protection and Privacy) Regulations 1999)에 따라 원하지 않은 팩스, 전화, 이메일 등의 다이렉트 마케팅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 3. 업무범위

영국의 정보커미셔너가 활동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은 1998년 정보보호법인 바, 동법은 민간과 공공부문, 자동화된 개인정보파일 및 수기파일에 모두 적용되는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가진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이다. 따라서 정보커미셔너 역시 민간과 공공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를 감독하고 규제할 뿐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의료정보, CCTV, 신용정보, 교육정보, 정보통신분야, 근로자 정보, 다이렉트 마케팅 등 각 영역별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도 각종 지침이나 규약의 제정을 통해 관할하고 있다.

### 4. 조직구성

영국의 정보커미셔너는 커미셔너 1인을 비롯하여 부커미셔너 2인 및 인사회계국, 마케팅홍보국, 법률자문부서, 전략정책보조커미셔너로 구성되며, 직원은 약 200여명이다. 1인의 부커미셔너는 법규준수여부 감독(특히, 전자통신 분야 등) 및 개인정보침해행위 조사, 각종 고지명령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다른 부커미셔너는 의료정보, 신용정보, 금융기관, 연금, 보험 등의 분야에서의 개인정보침해행위 규제·감독의 역할을 한다. 법률자문부서에서는 개인정보관련법규의 해석이나 접수된 민원사건의 중대한 법적 쟁점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을 행하며, 전략정책보조커미셔너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연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또한 인사회계국에서는 직원채용에서부터 회계, 시설관리 등 행정일반에 관한 업무를 하며 마케팅홍보국에서는 외부홍보 및 캠페인 실시, 웹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보커미셔너 조직도>



## 5. 주요기능

영국의 정보 커미셔너는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자의 권리·의무를 알리고 법규를 준수토록 지도·감독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야 할 주된 임무를 맡고 있다. 커미셔너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① 화해권고 등을 통한 개인정보피해구제, ②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등록부 관리, ③ 정보공개명령권의 행사, ④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⑤ 개인정보처리행위 감독 및 규제, ⑥ 상담 및 정보제공, ⑦ 입법안 검토 및 정책자문, ⑧ 자율규제활동의 지원, ⑨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⑩ 국내의 협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보커미셔너의 주요기능과 업무>

주요기능	세부내용
피해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불만사항이나 개인정보침해신고 접수</li> <li>· 당사자 자료제출요구, 의견청취,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실조사</li> <li>·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한 법규위반여부 심사</li> <li>· 민원심사과정에서 화해권고 등 개인정보 분쟁조정</li> <li>· 법규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이행고지 또는 정보고지 부과</li> <li>· 불이행시 정보법원(Information Tribunal)에 소송지원</li> </ul>
등록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처리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등을 통한 등록업무 처리</li> </ul>
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보공개명령권 행사</li> </ul>
조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라이버시 침해여부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li> <li>· 정보보호원칙 및 법규 준수여부 감독</li> <li>· 개인정보침해행위 및 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명령(고지) 부과</li> <li>· 이행명령 불이행시 및 법규위반 확인시 검찰 등 해당기관 고발</li> </ul>
프라이버시 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개인정보보호 행동규약(Code of practice)의 제정 및 고시</li> </ul>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과 사업자, 정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각각 정보제공 및 자문</li> <li>· 정보처리자 요청시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상담 및 평가정보 제공</li> </ul>
정책 및 입법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관련 법안 심의 및 의견제시</li> <li>·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하여 의견제시 및 자문</li> </ul>
개인정보보호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연구</li> </ul>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단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li> <li>· 개인정보보호 공공캠페인 실시</li> <li>· 언론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커미셔너 활동 등 홍보</li> </ul>
유관기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관련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li> <li>· EU 등 해외 개인정보보호기구와의 국제협력</li> </ul>